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564호

화성동탄(2)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(21차)을 승인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(031-8008-3246), 화성시 지역개발과(031-5189-6223),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(031-379-6935),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사업부(031-548-272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2년 10월 07일

국토교통부장관

화성동탄(2)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(21차)

1. 실시계획 변경승인(21차)

가. 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나.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(변경)

구분	시행자	주 소	성 명
기정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(충무공동)	김현준
변경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(충무공동)	이정관(직무대행)
기정	경기주택도시공사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(권선동)	전형수(직무대행)

다. 사업의 목적과 개요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라. 사업시행기간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마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바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사.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, 지번 및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.주소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아.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자.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: 붙임 1

※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(031-8008-3246), 화성시 지역개발과(031-5189-6223),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(031-379-6935),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사업부(031-548-272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붙임1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

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

I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II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III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. 용도지역.지구.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2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3.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

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나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다.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.용적률.높이.배치.형태.색채.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라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마.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도 : 진출입 불허구간 변경



바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